

제 269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3.9.)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4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2.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2. 27.

2. 제안이유

-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드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함(안 제5조)
 - 1) 드론 교육기관 ⇒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 나.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교육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4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31. ~ 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2017년 11월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 2017년 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 계획 수립, 2019년 4월 드론법 제정, 2020년 11월 드론산업 육성 정책 2.0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 중임.

○ 세계 드론시장은 '20년 기준 225억\$이며, 연평균 13.8% 성장하여 '25년에는 428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 역시 '16년 704억원에서 '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하여 '24년에는 8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낚시 등 드론 레저산업이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 우리군에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군민들이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더 나아가 향후 드론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드론 부품·기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 비행시험장, UAM시험설비 등 상용화 지원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2) 드론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

나. 관련조문

-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5조)
- 2) 드론 교육 및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준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1. 학생대상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0천원
2.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30,000천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비행관리 및 지원 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2. 2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2. 27.

2. 제안이유

-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 등에게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 농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함(안 제4조)
- 다.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제11조)
- 라.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능 등을 정함(안 제12조)
- 마. 농촌인력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지원 신청 등을 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3.~2.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해 재배규모를 줄이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으며
-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의 위협으로 우리 군도 언제 식량위기를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사수를 위해 1차 산업을 지탱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중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직영 또는 전문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체계적인 농촌인력의 관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자칫 인건비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바임.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나. 관련조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	300	300	300	300	1,5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 300백만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8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 10.>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0의2. 계절근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

(E-8)

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현행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2012.03.26 조례 제2071호

(전부개정) 2019.10.08 조례 제25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란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자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시설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2.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 농가,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등
2. 농업근로자

제8조(지원 신청) 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을 마친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 법제처 2022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415 약칭

▷“A,B,C~”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B,C~”등의 공통 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입법례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 주무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추가검토 4 P129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함이 원칙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2. 2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2. 27.

2. 제안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때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이차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정의 인용 상위법령 변경(안 제2조)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나. 이차지원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2조)
- 다. 이차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안 제5조)
- 라. 특례보증 신설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3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6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21. ~ 2023. 1.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제2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고
- 제7조에 특례보증 근거를 신설하여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소상공인 이차지원 범위 확대
- 나. 관련 조문: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군비	192	384	384	384	384	1,728

3. 관련 의견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이차지원

- 1) 2023년: 융자액 48억(출연금의 12배)×4퍼센트=192백만원
- 2) 2024년: 384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

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23. 2. 27.
- 나. 발 의 자 : 이재운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3. 2. 27.

2. 제안이유

-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지원 규모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함
- 나. 지원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물에서 마을회관으로 변경(안 제 2조~제5조)
- 다. 지원금액을 확대함(안 제5조)
 - 1) 원칙: 1천만원 이내 ⇒ 2천만원 이내
 - 2) 예외: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라. 준용, 시행규칙 삭제(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4. ~ 3.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제2조 시설물의 종류를 경로당, 놀이터 등 관리주체가 분명한 항목은 제외하고 마을회관 등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 제5조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지원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2. 2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2. 27.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①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사업

1. 제안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하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 되는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하고 있음
 - ※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36홀, 축구장 3면, 풋살장 2면
- 하천구역 내 이동 또는 고정 건축물 입지가 불가하여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 대지면적 : 6,103㎡
- 사업내용 : 관리사무실 200㎡(사무실, 화장실 등), 주차공간 등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2년간
- 사 업 비 : 1,500백만원 정도
- 주요기능 :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부지로 활용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7필지		6,103	107,034,100			
취득	토지	남하면 무릉리 505	답	1,244	25,128,800	2023	제2창포원 생활체육 시설 부대시설 확충	
		남하면 무릉리 504	답	127	2,565,400			
		남하면 무릉리 503	답	1,276	20,033,200			
		남하면 무릉리 502	답	506	7,944,200			
		남하면 무릉리 501	답	1,043	22,320,200			
		남하면 무릉리 501-1	답	1,159	18,196,300			
		남하면 무릉리 496	답	748	10,846,000			

※ 기준가격은 최근 공시지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 시 변동가능성 있음)

다. 추진경과

- 2021. 6. :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지 체육시설 활용 건의(군수)
- 2021.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 10. : 하천기본계획 변경(복원→친수)

라. 향후계획

- 2023. 1. :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
- 2023. 2. :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및 위·수탁 협약
- 2023. 5. : 편입부지 보상 협의
- 2023. 6. : 실시설계 용역

- 2023. 10. :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
- 2024. 1 : 사업 착공
- 2024. 12 : 사업 완료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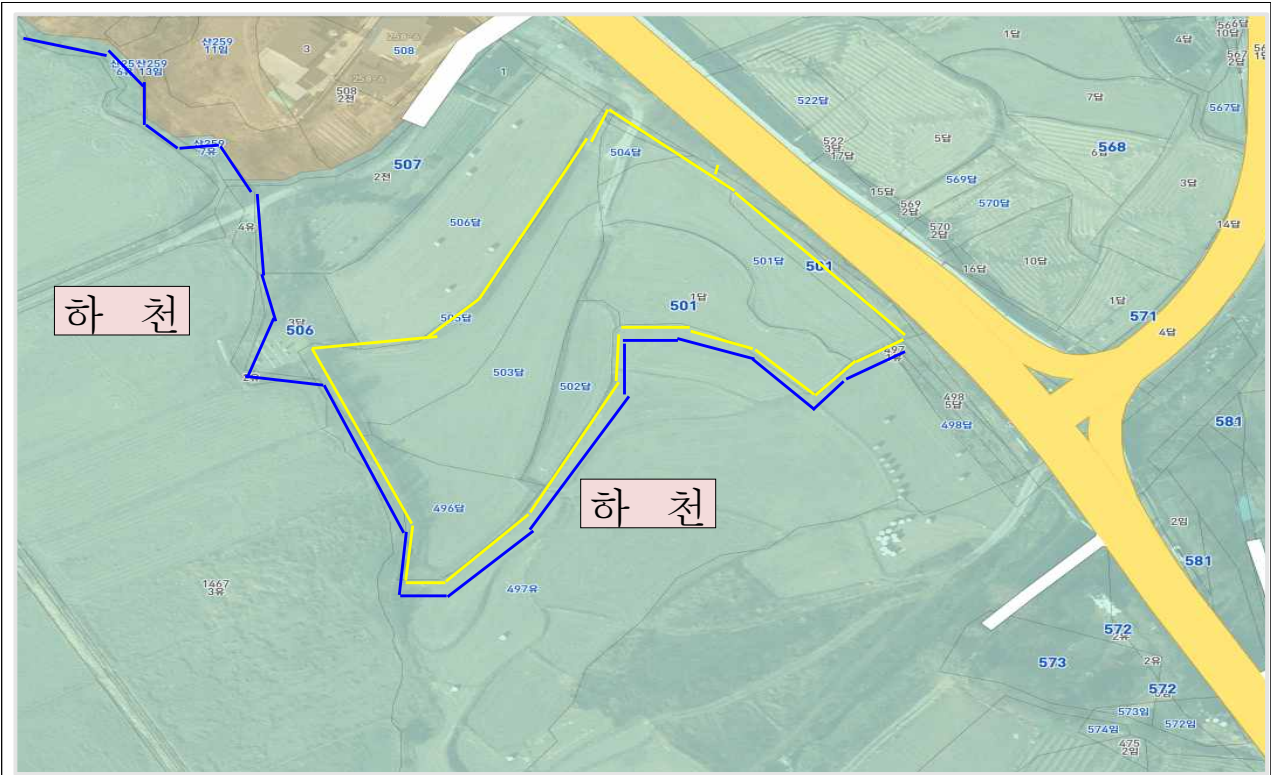
-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및 각종 대회 참여자들의 편의 증진
- 군민 여가 및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 :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위 치 상 세

5. 검토의견

- 남하면 무릉리 일원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풋살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 완공 후 사무실, 화장실,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하천구역 내 이동 또는 고정 건축물 입지가 불가하므로
- 하천구역이 아닌 인근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6,103㎡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향후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변경

1. 제안이유

-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과 감악산 산림관광 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내용 변경에 따른 취득 계획 변경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17번지 외 12필지
- 대지면적 : 746,087m²정도(1,844,438m²→ 746,087m²)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2년간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 내 용 : 감악산 산림휴양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산림 치유의 숲(80ha), 숲속야영장(25ha) 조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746,087	307,806			
취득	토지	신원면 덕산리 산13-1	임야	68,838	43,368	2023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신원면 덕산리 산13-14	임야	1,920	1,267			
		신원면 덕산리 산13-15	임야	27,075	17,328			
		신원면 덕산리 산13-16	임야	1,767	1,166			
		신원면 덕산리 산13-18	임야	128,659	59,183			
		신원면 과정리 산150	임야	277,040	99,734			
		신원면 과정리 산150-1	임야	14,823	5,485			
		신원면 과정리 산150-2	임야	600	222			
		신원면 과정리 산153	임야	595	220			
		신원면 과정리 산154	임야	46,909	16,418			
		신원면 과정리 산159	임야	39,967	14,788			
		신원면 과정리 산161	임야	36,340	13,082			
		신원면 과정리 산132	임야	101,554	35,544			

다. 추진경과

- 2021. 12.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
- 2022. 11.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 2022. 11. : 2022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통과)

라. 향후계획

- 2023. 1. :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타당성 용역 시행
- 2023. 1. : 감정평가 등 매입 전 사전절차 이행
- 2023. 3. ~ 6. : 토지 매입

마. 기대효과

- 마스터플랜의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로 감악산 관광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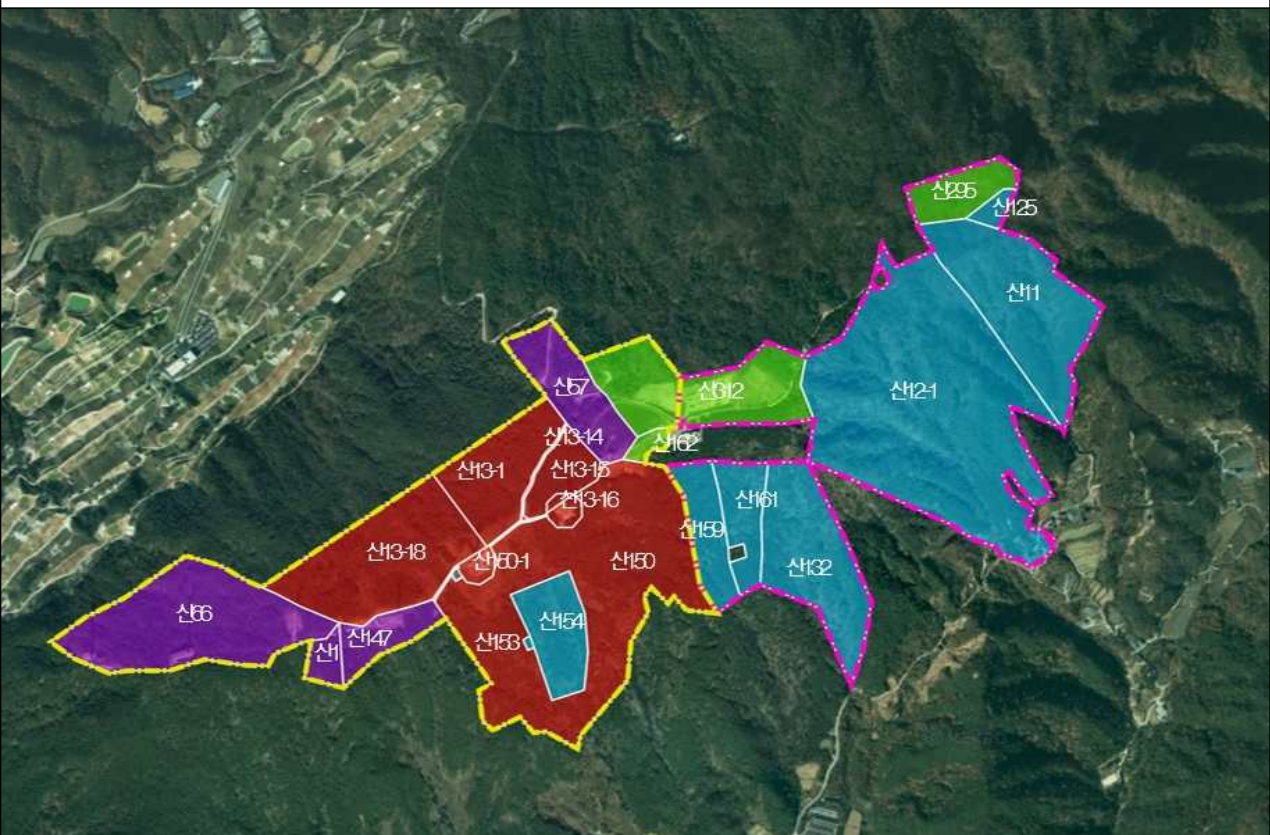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 : 신원면 덕산리 산13-1 등 13필지



지구조성 계획(안)

5. 검토의견

- 2022년 11월 수립한 감악산 및 주요 명산 마스터플랜에 따라 산림관광객 100만 시대를 목표로 감악산 산림관광 지구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당초 184ha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필수사업 부지 74ha를 우선 매입하고자 함.
- 코로나 이후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산림휴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편입부지 및 지장물건 매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지구”로 선정된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된 축사 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소와 유해물질의 취수원 유입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지역민의 삶 건강권 확보 목적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건(폐축사 등) 등을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2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 5년간
- 사업내용 : 폐축사 철거 및 동산마을 환경개선
(친환경 경관농업단지 조성, 치유마을 조성 등)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국 12,500, 도 3,750, 군 8,75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5%)	4년차 (25%)	5년차 (25%)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5,000	2,500	3,750	6,250	6,250	6,250	
국 (50%)	12,500	1,250.0	1,875.0	3,125.0	3,125.0	3,125.0	
도 (15%)	3,750	375.0	562.5	937.5	937.5	937.5	
군 (35%)	8,750	875.0	1,312.5	2,187.5	2,187.5	2,187.5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참조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면적(㎡)				
계				7,287,133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18번지 등 52필지	48,816	2,457,926	2023 ~ 2024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	
	지장 건물	축사 84동 및 창고 33동 등 지장건물 36동	21,256	4,829,207	2023 ~ 2024	사업부지 편입	

※ 1)기준가격 적용 : 토 지 → 현.기준 공시지가
지장건물 → 가감정 결과

다. 추진경과

- 2022. 8. : 2022년 경남도 투자심사(재정영향평가) 완료
- 2022. 10. : 2022년 농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선정
- 2023. 2. : 지장물건 편입조서 및 물건도 작성용역 완료
- 2023. 2.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공고

라. 향후계획

- 2023. 2. ~ 3. : 농식품부 사업구역 조정·협의 → 확정
- 2023. 4. : 편입물건 보상협의 착수
※ 농식품부 협의결과에 의거 착수시기 유동적
- 2023. 3. ~ 10.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농식품부 승인
- 2023. 11. ~ 2024. 6. :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농식품부 승인
- 2024. 7. ~ 2026. 12. : 공사 착공 및 준공(장기계속공사)

마. 기대효과

- 폐슬레이트 축사 정비를 통한 쾌적한 녹지경관 공간 조성

- 거창군 향노화웰니스산업 연계 녹색삶터 조성
- 농촌협약 LINK조직 연계 생태경관 학습기반 확대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지적현황, 현장전경 : 붙임참조

[붙임1] 편입토지 조서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적용)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8,816	2,457,926,300	
1	거창읍	대동리	518	전	631	18,551,400	2023~2024
2	거창읍	대동리	519	답	2,837	109,791,900	
3	거창읍	대동리	527	답	2,307	111,889,500	
4	거창읍	대동리	529-6	대	142	16,756,000	
5	거창읍	대동리	530-56	대	253	27,577,000	
6	거창읍	대동리	528-8	답	687	74,883,000	
7	거창읍	대동리	528	답	771	30,146,100	
8	거창읍	대동리	528-7	답	632	68,888,000	
9	거창읍	대동리	529-4	대	210	22,785,000	
10	거창읍	대동리	530-57	대	399	43,291,500	
11	거창읍	대동리	528-10	답	795	86,257,500	
12	거창읍	대동리	528-5	답	1,250	132,500,000	
13	거창읍	대동리	530-35	전	2,786	63,242,200	
14	거창읍	대동리	530-34	전	538	28,729,200	
15	거창읍	대동리	529-5	대	314	34,226,000	
16	거창읍	대동리	530-24	전	614	58,821,200	
17	거창읍	대동리	520-2	답	2,479	95,937,300	
18	거창읍	대동리	522-2	답	553	21,401,100	
19	거창읍	대동리	522	답	2,056	79,567,200	
20	거창읍	대동리	523	답	5,044	195,202,800	
21	거창읍	대동리	528-2	답	547	59,623,000	
22	거창읍	대동리	528-3	답	589	64,790,000	
23	거창읍	대동리	528-11	답	235	24,910,000	
24	거창읍	대동리	528-1	답	266	25,482,800	
25	거창읍	대동리	528-4	답	291	32,010,000	
26	거창읍	대동리	528-6	답	486	51,516,000	
27	거창읍	대동리	529-3	대	145	17,110,000	
28	거창읍	대동리	530-11	전	245	10,486,000	
29	거창읍	대동리	530-7	전	496	19,691,2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적용)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30	거창읍	대동리	530-17	전	1,618	38,023,000		
31	거창읍	대동리	530-47	전	2,553	79,143,000		
32	거창읍	대동리	526	답	2,314	89,089,000		
33	거창읍	대동리	522-1	목장 용지	1,805	71,297,500		
34	거창읍	대동리	521	창고 용지	496	12,747,200		
35	거창읍	대동리	532-1	창고 용지	625	74,375,000		
36	거창읍	대동리	532-3	전	800	75,840,000		
37	거창읍	대동리	530-54	전	170	16,286,000		
38	거창읍	대동리	324-1	전	69	6,417,000		
39	거창읍	대동리	324-2	대	450	47,250,000		
40	거창읍	대동리	530-62	대	110	12,100,000		
41	거창읍	대동리	530-53	전	118	10,856,000		
42	거창읍	대동리	530-33	대	164	19,188,000		
43	거창읍	대동리	530-48	전	324	14,968,800		
44	거창읍	대동리	528-9	답	96	10,560,000		
45	거창읍	대동리	529	대	134	5,239,400		
46	거창읍	대동리	산38-6	임야	660	25,806,000		
47	거창읍	대동리	산77	구거	1,625	100,425,000		
48	거창읍	대동리	970	구거	3,226	42,260,600		
49	거창읍	대동리	971	구거	298	11,651,800		
50	거창읍	대동리	972	도로	1,759	23,042,900		
51	거창읍	대동리	530-52	전	178	16,376,000		
52	거창읍	대동리	530-23	전	626	28,921,200		

[붙임2] 편입 지장물건 조서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계			21,256		㎡	4,829,207,540	
1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93	㎡	11,160,000	2023~2024
2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80	㎡	9,600,000	
3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104	㎡	28,080,000	
4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48	㎡	66,960,000	
5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7.36	㎡	7,387,200	
6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380	㎡	102,600,000	
7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74.8	㎡	17,503,200	
8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58.4	㎡	69,768,000	
9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88.4	㎡	10,608,000	
10	거창읍	대동리	520-2 522-2	퇴비사	352	㎡	45,408,000	
11	거창읍	대동리	520-2 522-2	축사	308	㎡	74,844,000	
12	거창읍	대동리	522	축사	311.6	㎡	84,132,000	
13	거창읍	대동리	522	퇴비사	210	㎡	27,090,000	
14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22.1	㎡	3,978,000	
15	거창읍	대동리	522	축사	243	㎡	65,610,000	
16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12.5	㎡	2,250,000	
17	거창읍	대동리	522	화장실	2.25	㎡	1,200,000	
18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63	㎡	11,340,000	
19	거창읍	대동리	521	저온 창고	108	㎡	68,040,000	
20	거창읍	대동리	521	가추	132	㎡	12,540,000	
21	거창읍	대동리	521	바닥	120	㎡	2,400,000	
22	거창읍	대동리	530-34	축사	117	㎡	28,431,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23	거창읍	대동리	530-34	창고	4	㎡	972,000		
24	거창읍	대동리	530-34	축사 (창고)	55	㎡	13,365,000		
25	거창읍	대동리	530-34	창고	7	㎡	1,701,000		
26	거창읍	대동리	530-35	축사	259	㎡	62,937,000		
27	거창읍	대동리	530-35	가추	45	㎡	3,600,000		
28	거창읍	대동리	530-35	퇴비사	264	㎡	36,696,000		
29	거창읍	대동리	530-35	축사	368.6	㎡	89,569,800		
30	거창읍	대동리	522-1	축사	695.4	㎡	187,758,000		
31	거창읍	대동리	522-1	작업장	132	㎡	39,204,000		
32	거창읍	대동리	522-1	관리사	264	㎡	102,168,000		
33	거창읍	대동리	530-17	축사	296.4	㎡	80,028,000		
34	거창읍	대동리	530-17	축사 (완파)	304	㎡	3,040,000		
35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120	㎡	14,400,000		
36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161	㎡	19,320,000		
37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40	㎡	4,800,000		
38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4.4	㎡	38,988,000		
39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4.4	㎡	38,988,000		
40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0.6	㎡	37,962,000		
41	거창읍	대동리	530-47	창고	225.9	㎡	52,860,600		
42	거창읍	대동리	530-47	화장실	5	㎡	1,500,000		
43	거창읍	대동리	530-48	축사	33	㎡	7,425,000		
44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10	㎡	2,250,000		
45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72.3	㎡	16,267,500		
46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7.5	㎡	1,687,5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47	거창읍	대동리	530-48	축사	15	㎡	3,375,000		
48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창고	84	㎡	18,144,000		
49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가추	24	㎡	1,440,000		
50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축사	110	㎡	29,700,000		
51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축사	114	㎡	30,780,000		
52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창고	7.5	㎡	1,350,000		
53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32	㎡	7,776,000		
54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72.6	㎡	17,641,800		
55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88	㎡	21,384,000		
56	거창읍	대동리	530-24	가추	24	㎡	1,920,000		
57	거창읍	대동리	530-24	창고	22	㎡	3,960,000		
58	거창읍	대동리	530-24	창고	17	㎡	3,060,000		
59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912	㎡	287,280,000		
60	거창읍	대동리	523	물 탱크실	4.5	㎡	598,500		
61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585.2	㎡	158,004,000		
62	거창읍	대동리	523	창고	40	㎡	7,200,000		
63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14	㎡	2,520,000		
64	거창읍	대동리	523	창고	10.5	㎡	1,890,000		
65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260	㎡	63,180,000		
66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320.5	㎡	77,881,500		
67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퇴비사	236.8	㎡	30,547,200		
68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69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70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71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창고	3.6	㎡	478,800	
72	거창읍	대동리	526	주택 등	49.4	㎡	20,007,000	
73	거창읍	대동리	526	보일러 실	2.5	㎡	285,000	
74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190	㎡	51,300,000	
75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243.2	㎡	65,664,000	
76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319.2	㎡	86,184,000	
77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349.6	㎡	94,392,000	
78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288.8	㎡	77,976,000	
79	거창읍	대동리	526	퇴비사	153	㎡	19,737,000	
80	거창읍	대동리	526	퇴비사	243.2	㎡	31,372,800	
81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304	㎡	82,080,000	
82	거창읍	대동리	527	가축 (창고)	156	㎡	14,820,000	
83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73.6	㎡	73,872,000	
84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81.2	㎡	75,924,000	
85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86	㎡	77,220,000	
86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190	㎡	51,300,000	
87	거창읍	대동리	527	가축	3.6	㎡	288,000	
88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197.6	㎡	53,352,000	
89	거창읍	대동리	528-1	축사	57.2	㎡	13,899,600	
90	거창읍	대동리	528-1	축사	144	㎡	34,992,000	
91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반파)	248.4	㎡	23,598,000	
92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반파)	96	㎡	9,120,000	
93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72	㎡	17,496,000	
94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퇴비사	120	㎡	14,400,000	
95	거창읍	대동리	528-4	축사	190	㎡	51,300,000	
96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16	㎡	3,600,000	
97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90	㎡	46,170,000	
98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1.5	㎡	186,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99	거창읍	대동리	528-5	퇴비사	184	㎡	22,080,000	
100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67.2	㎡	40,629,600	
101	거창읍	대동리	528-5	계근대 및 창고	45.6	㎡	6,064,800	
102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6.5	㎡	806,000	
103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97.6	㎡	48,016,800	
104	거창읍	대동리	528-7	퇴비사	92.4	㎡	11,088,000	
105	거창읍	대동리	528-7	축사 (반파)	124.8	㎡	11,856,000	
106	거창읍	대동리	528-7	퇴비사	83.6	㎡	10,032,000	
107	거창읍	대동리	528-9	축사	66	㎡	16,038,000	
108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퇴비사	74.4	㎡	8,928,000	
109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11.7	㎡	27,147,960	
110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82.2	㎡	44,284,320	
111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41.3	㎡	34,350,480	
112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반파)	125.4	㎡	11,913,000	
113	거창읍	대동리	971외	축사	147	㎡	31,752,000	
114	거창읍	대동리	529-5	축사	129.5	㎡	34,965,000	
115	거창읍	대동리	529-6	축사	133	㎡	35,910,000	
116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퇴비사	78.3	㎡	9,396,000	
117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112.2	㎡	27,264,6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118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180	㎡	17,100,000	
119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창고	7.2	㎡	1,296,000	
120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96	㎡	9,120,000	
121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퇴비사	72	㎡	8,640,000	
122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45	㎡	10,935,000	
123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45	㎡	4,275,000	
124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90	㎡	21,870,000	
125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140	㎡	34,020,000	
126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221	㎡	53,703,000	
127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197.1	㎡	47,895,300	
128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창고	158.4	㎡	20,433,600	
129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창고	72.8	㎡	9,391,200	
130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반파)	51.84	㎡	4,924,800	
131	거창읍	대동리	530-52	창고 (반파)	60	㎡	6,840,000	
132	거창읍	대동리	530-54	창고	104.2 8	㎡	22,524,480	
133	거창읍	대동리	530-33	축사	77	㎡	17,325,000	
134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축사	347.8	㎡	93,906,000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135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가추 (창고)	18	㎡	1,440,000		
136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축사	69.3	㎡	16,839,900		
137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퇴비사	111	㎡	14,319,000		
138	거창읍	대동리	532-1	창고	187	㎡	52,173,000		
139	거창읍	대동리	532-1	가추	65	㎡	4,550,000		
140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24.8	㎡	30,326,400		
141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방 및 창고	82.8	㎡	26,082,000		
142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가추	17.5	㎡	1,400,000		
143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64	㎡	15,552,000		
144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55.4	㎡	41,958,000		
145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85	㎡	49,950,000		
146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85	㎡	49,950,000		
147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퇴비사	115.2	㎡	14,860,800		
148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가추 (창고)	36	㎡	3,420,000		
149	거창읍	대동리	530-23	축사	175.5	㎡	42,646,500		
150	거창읍	대동리	530-23	축사	97	㎡	23,571,000		
151	거창읍	대동리	530-23	화장실	2.24	㎡	1,400,000		
152	거창읍	대동리	530-23	축사	108	㎡	26,244,000		
153	거창읍	대동리	530-23	창고 (반파)	4	㎡	380,000		

[붙임3] 위도 및 지적현황, 현장전경





5. 검토의견

- 동산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폐축사의 악취와 유해물질로 오랜 세월 주거 환경의 위협을 받아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공간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하여 폐축사 단지 120동을 철거하고, 친환경 경관단지와 교육농장, 생태습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④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소관 「1)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 구.거창중학교 1)신원분교(폐교) 부지 일부를 활용,
 - ①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 : 주민 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 ② 체육관 리모델링 : 지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 1)주거플랫폼 구축사업

- 추진방향 :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생활SOC+일자리'를 연계하여 공급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 위치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253-5번지 (구.신원분교)
- 사업기간 : 2022. ~ 2024.
- 사업내용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1층, A=469m²),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1층, A=295m²)
- 총사업비 : 2,800백만원(균특 100%)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센터 신축	2,800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00	시행계획 수립·고시	2,040	공사 준공	560		
균특	-	2,800		200		2,040		560		
도비	체육관 리모델링	-		-		-		-	-	
군비		-		-		-		-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 취득내용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 1동 (1층, 건축면적 469㎡)
-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 1동 (1층, 건축면적 295㎡)

○ 세부 시설내역 및 소요예산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신축) : 1,725백만원(3.7백만원/㎡ 적용)

층별	세부시설	건축면적(㎡)	용도
계		469.0	주민 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1층	다목적홀	144.0	동아리 활동 및 영화관, 행사공간
	숲속 도서관	40.3	도서관
	카페/휴게실	64.0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74.9	이용편의시설
	복도 등 기타	145.8	부대시설

- 체육관(리모델링) : 810백만원(2.7백만원/㎡ 적용)

층별	세부시설	건축면적(㎡)	용도
1층	체 육 관	295	체육 및 동아리 활동, 행사공간

다. 추진경과

- 2021. 8. :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선정
- 2022. 2.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사업부지 용도변경)

< 당 초 >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1	과정리 253 구.신원중	12,756	노인 요양 시설 신축	행복 나눔과

분할
→

< 변 경 >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1	과정리 253	10,627	노인 요양시설 신축	행복 나눔과
2	과정리 253-5	2,129	주거 플랫폼 구축	미래 전략과

- 2022. 6. :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 2022. 8. :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2. : 주민설명회 개최 -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

라. 향후계획

- 2023. 4. :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3. 4. ~ 5. :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사업 승인·고시
- 2022. 6. ~ 2024.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지역소멸 위기의 면지역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 지역민 문화·체육 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지역민 간 화합의 공간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건축계획도 : 붙임 참조

[붙임1] 위치도 및 건축계획도

□ 위치도 (사업계획도)



□ 건축계획도



5. 검토의견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8억원을 확보하여
- 구. 거창중학교 신원분교 폐교 부지에 주민 소통 문화공간과 지역민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은 어울림센터 숲 도서관 신축 1동(469㎡)과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 1동(295㎡)임.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은 신원초등학교 폐교위기 탈출을 위한 LH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과 연계해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필요성이 상당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

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